



기술발전과 남세자의 권리 토론문

장윤주 | 아름다운재단 연구파트 연구원 sam@beautifulfund.org

가상화폐, NFT 거품이 꺼진 현재 관련 논의를 하기 적절한 시점

비현금성 자산 기부 중 현물기부 평가제도 개선에서 자산의 평가 개선안에 동의

현금 안 받는 스타벅스…법적 문제없을까

김보라 기자 bora5775@bizwatch.co.kr 2019.12.10(화) 14:49

〈김보라의 UP데이터〉 전국 스타벅스 1354개 중 절반이 '현금 없는 매장' 70대 이상 노인 신용카드 보유비율 절반도 안 돼 "현금 안받는다는 '공지' 법적문제, 우리도 논의해야"

특정 물건을 구매하려면 그에 걸맞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죠. 문명사회 이전에는 물물교환이 이루어 겼지만 이후 화폐가 발달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폐와 주화 즉 현금이 지급수단의 핵 심이 됐습니다.

출처: 워치뉴스 http://news.bizwatch.co.kr/article/policy/2019/12/10/0002

스타벅스 커피 '비트코인'으로 산다

김형원 기자

입력 2021.07.01 06:00



한국서 투기수단으로 전락한 암호화폐가 글로벌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결제수단으로 정착 하는 움직임을 보인다. 스타벅스가 디지털 지갑 백트와 손잡고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결제 를 받기 시작했고, 글로벌 결제대행 페이팔도 미국 현지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선보였 다. 향후 2900만곳의 글로벌 가맹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.

출처: 조선IT

https://it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21/06/30/2021063002641.html

소비 수단이 현금에서 비현금성, 디지털 자산으로 이 동하는 것과 같이 현금에서 비현금성 자산으로 기부 가 확산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성

해외 및 국내 기부 동향

- Giving Block과 같은 가상화폐 기부 플랫폼 성장
- 우크라이나전쟁,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등 재난으로 국경을 넘는 기부에 가상화폐 기부 확산
- 국내 사례

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지회 : 1억원 상당 비트코인 수령.

업비트 회원 + 유엔세계식량계획(WFP) 우크라이나 기부 총 11억 6천만원

업비트 이용자 +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비트코인 14개 튀르키예에 기부 총 4억 4천만원

법제도 미비 VS 두려움,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?

- 앞의 국내 실행 사례를 통해 어려운 점을 조금씩 해소해 나가고 있음
 - 우선, 기부받고 기부영수증 처리 가능했음
 - 가상화폐 수령과 책정 기준에 대한 레퍼런스가 생김
 - 변동성, 수수료 처리 예상하고 대응 가능
 - 거래소 법인 지갑 개설이 제한적이라는 어려움, 법인 현금화 못하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



- 변동성 주식기부의 사례와 유사
 - 기부를 받고 판매 했을때 차액에 대해 과세
 - 시세 변동에 따라 재무재표에 반영하면 됨 *시장가치에 따른 변동 자체가 리스크는 아님
 - 위메이드의 사례 레슨 : 변동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

질문

- 가상화폐 기부 사례가 실례로 있어왔는데, 공익법인 과세 여부 논의에 따라 과세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가? (발제에서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)
- 주식 기부와 가상자산 기부의 유사점/차이점
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것은 동일하나, 주식의 최대출자비율 규정 적용될 여지는 없을 것이라는 해석에 관해
 - -> 과세가액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?
 - -> 최대출자비율 적용이 가상화폐에서 가능한지?



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!